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
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주택공간위원회 서준오 의원

○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!

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서준오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
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
드리겠습니다.

○ 현행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학교들은

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

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각급 학교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
학부모회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,
중임 제한 규정으로 인해 학부모회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.

-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,
학교 학부모회 운영 시 각급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
학부모회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
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- 본 조례 개정을 통해
각급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
학부모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.

-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!
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